

# 2026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김포복지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4층
사업규모	연간		
사업목적	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상사업 등)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45,042	1,290,162	1,256,382	0	85,728	-51,948	1,613,100	322,93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45,042	1,290,162	1,256,382		85,728	-51,948	1,613,100	322,938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13,100	
김포복지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인건비 및 운영비 : 725,996,000원 + 443,614,000원 . 사업비 : 443,490,000원	= 1,169,610 = 443,490	

## □ 예산요구 사유

- 재단 현원 11명 기준 인건비(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편성
- 재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유지보수용역비, 세금 및 공공요금, 수수료, 여비 등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재단 인건비 110,453천원 증액
  - 재단 현원 11명 기준에 따른 인상률 범위 내 호봉 승급 등 추가 소요분 반영
- 재단 일반운영비 4,885천원 감액
  - 각종 수수료, 여비, 유지보수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감액 편성
- 사업비 217,370천원 증액
  - 복지정책연구포럼, 김포형복지그물망강화, 나눔문화 및 네트워크 확산 사업 증액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 02. : 연간 및 세부계획 수립
  - 2026. 1. : 정기 이사회 및 결산, 수탁시설 운영 및 전반 계획 수립 등
  - 2026. 1. ~ 12. : 단위사업 추진
  - 2026. 10. : 정기 이사회 및 결산, 수탁시설 운영 및 전반 계획 수립 등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66,106천원 모금액 : 823,062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190가구</li> <li>- 지역사회 현안사업 101회, 긴급재해재단 사업 644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59가구, 가족기능강화사업 30가구</li> <li>- 명절지원사업 184개소/ 1,610가구, 우리김포긴급지원사업 426가구, 정기결연지원사업 2,243가구, 미래세대성장사업 523가구</li> <li>-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사업 28개소, 차량지원사업 4개소, 기관협력지원사업 36개소</li> <li>- 사회복지인식개선사업 18회,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사업 19회, 힐링지원사업 10회/431명, 사회복지시설지원 32회</li> <li>-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 13회, 사례관리회의 8회, 시민모니터링 9회, 복지네트워크 사업 9회)</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00,000천원 모금액 : 1,363,038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70가구</li> <li>-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161건, 우리김포긴급지원 1,275건 (보훈취약계층 699건)</li> <li>- 정기결연지원사업 1,938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7건, 명절지원사업 1,711건/134개소</li> <li>-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42건, 차량지원사업 1개소</li> <li>- 나눔교육사업 10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사업 12회, 복지시설컨설팅지원사업 17회</li> <li>- 시민모니터링단 18회, 복지협력네트워크 12회, 업무협약 1회</li> </ul>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53건, 우리김포긴급지원 122건, 보훈취약계층지원 311건</li> <li>- 정기결연지원사업 1,146건, 미래세대성장사업 52건, 명절지원사업 1,093건/116개소</li> <li>-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10가구,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64건,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공모사업 11건, 복지시설컨설팅지원사업 17회</li> <li>- 나눔교육 50건,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16건, 힐링지원사업 1건, 복지협력네트워크 5회</li> </ul>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1,700	1,161,242	-	160,458	
2024	1,145,042	945,558	-	199,484	
2025	1,290,162	726,427	-	563,438	8.28.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경영지원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경영지원부 차장 장선화	전화	989-0341
-----	-------	---------------	-----	--------------	----	----------

구분	항목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B)	
<b>총 계</b>		<b>1,613,100</b>	<b>1,256,382</b>	<b>356,718</b>	
<b>인건비</b>	<b>소계</b>	<b>725,996</b>	<b>560,237</b>	<b>165,759</b>	
인건비(101)	보수(01)	602,900	481,592	121,308	
	퇴직급여(107)	74,340	53,316	21,024	
	평가급(109)	48,756	25,329	23,427	
<b>운영경비</b>	<b>소계</b>	<b>443,614</b>	<b>470,025</b>	<b>△ 26,411</b>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78,864	72,298	6,566	
		소모품비	15,820	14,506	1,314
		도서인쇄비	11,340	7,560	3,780
		지급임차료	11,784	9,436	2,348
		지급수수료	39,920	40,796	△ 876
		공공운영비(02)	28,900	28,860	40
		공공요금및제세	10,150	10,150	-
		전기요금	10,200	10,200	-
		차량유지비	5,400	5,400	-
		보험료	3,150	3,110	40
	교육훈련비(12)	8,090	7,040	8,090	
	회의비(14)	11,300	7,500	11,300	
	기타복리후생비(15)	45,540	35,190	10,350	
여비(202)	국내여비(202)	6,600	9,240	△ 2,640	
업무추진비(203)	사업업무추진비(01)	8,000	5,000	3,000	
직무수행경비(204)	직급보조비(01)	29,040	26,220	2,820	
	특정업무경비(02)	2,880	3,840	△ 960	
수선유지교체비(214)	수선유지비(05)	65,700	133,164	△ 67,464	
관서업무비(217)	정원가산업무비(01)	880	880	-	
	부서업무비(02)	3,000	3,000	-	
위탁관리비(220)	위탁관리비(220)	50,100	52,164	△ 2,064	
연금부담금등(304)	사회보험부담금(01)	79,170	77,229	1,941	
기타협의체등부담금(320)	기초협의체등부담금(01)	1,700	1,800	△ 100	
시설비및부대비(401)	시설비(01)	23,850	-	23,850	
자산취득비(405)	자산취득비(01)	-	6,600	△ 6,600	
<b>목적사업비</b>	<b>소계</b>	<b>443,490</b>	<b>226,120</b>	<b>217,370</b>	
일반운영비(201) 행사운영비	복지정책연구포럼	70,700	0	70,700	
	김포형복지 그물망강화	행복나눔콘텐츠개발	94,600	65,420	29,180
		맞춤형서비스기획지원	203,300	118,640	84,660
	나눔문화 및 네트워크 확산	시민역량강화사업	42,550	21,570	20,980
		복지네트워크확산사업	30,340	19,490	10,850
일반보상금(301)	행사실비보상금(10)	2,000	1,000	1,000	

구분	항목		시비 (A)	연합모금 (B)	예비비및기타 (C)	사업총액 (A)+(B)+(C)	사업량
<b>총 계</b>			1,613,100	1,164,050	27,600	2,804,750	
복지정책 개발	<b>소 계</b>		70,700	0	0	70,700	
	복지정책 연구포럼	복지정책연구포럼	70,700	-	-	70,700	2회
김포형 복지그물망 강화	<b>소 계</b>		299,900	1,164,050	0	1,463,950	
	취약계층 지원강화	우리김포긴급지원	-	370,000	-	370,000	12회/1,100명
		정기결연지원	-	226,200	-	226,200	12회/1,740명
		미래세대성장	-	50,000	-	50,000	100명
		맞춤형행복나눔지원	-	104,050	-	104,050	12회/100명
	행복나눔 콘텐츠 개발사업	나눔문화활성화	63,600	14,800	-	78,400	4회
		홍보대사활동보상	2,000	-	-	2,000	4회
		나눔문화영화제	10,000	-	-	10,000	1회
		62일간나눔릴레이	21,000	-	-	21,000	목표액 10억
	맞춤형 서비스 기획지원 사업	명절지원	125,200	-	-	125,200	2회/1,600명, 300개소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8,100	15,000	-	43,100	270명
		희망안전망	50,000	-	-	50,000	200명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사업	-	384,000	-	384,000	50개소
	나눔문화 및 네트워크 확산	<b>소 계</b>		72,890	0	0	72,890
시민역량 강화		사회복지중사자교육지원	21,190	-	-	21,190	22회/770명
		나눔교육	21,360	-	-	21,360	11회/1,462명
복지 네트워크 확산		복지시설단체컨설팅	21,180	-	-	21,180	18회
		복지협력네트워크	2,400	-	-	2,400	10회
		행복복지공감감동사례공모전	3,940	-	-	3,940	1회
		시민모니터링단	2,820	-	-	2,820	24회
조직의 안정화와 공정실현을 위한 ESG경영	<b>소 계</b>		1,169,610	0	2,600	1,172,210	
	재단운영	인건비	602,900	-	-	602,900	-
		퇴직급여	74,340	-	-	74,340	-
		평가급	48,756	-	-	48,756	-
		운영경비	443,614	-	-	443,614	-
예비비 및 기타		-	-	2,600	2,600	-	
수탁시설 운영강화 상생경영	<b>소 계</b>		0	0	25,000	25,000	
	수탁시설 운영	수탁시설 운영 지원	-	-	25,000	25,000	-

# 인건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23번길 52-15 4층
사업규모	재단 임직원		
사업목적	재단 임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상사업 등)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36,448	536,898	481,592	0	87,426	-32,120	725,996	189,09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36,448	536,898	481,592		87,426	-32,120	725,996	189,098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725,996</b>		
인건비	754-101-01 보수	소 계	602,900		
		· 기본급	(427,127)		
		- 대표이사 4,786,000원*1명*12월	=	57,432	
		- 4급 4,584,000원*1명*12월	=	55,008	
		- 5급 3,806,000원*2명*12월	=	91,344	
		- 6급 3,176,000원*3명*12월	=	114,335	
		- 7급 2,271,000원*4명*12월	=	109,008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5,996	
인건비	754-101-01 보수	소 계	602,900	
		· 가족수당	(9,960)	
		- 배우자 40,000원*3명*12월	= 1,440	
		- 부모 20,000원*6명*12월	= 1,440	
		- 첫째자녀 50,000원*7명*12월	= 4,200	
		- 둘째자녀 80,000원*3명*12월	= 2,880	
		· 명절휴가비	(42,713)	
		- 35,594,000원*60%*2회	= 42,713	
		· 자격수당	(2,880)	
		- 30,000원*8명*12월	= 2,880	
		· 직책급업무추진비	(4,200)	
		- 대표이사 350,000원*1명*12월	= 4,200	
		· 관리업무수당	(5,169)	
		- 대표이사 4,786,000원*9%*1명*12월	= 5,169	
		· 운영수당	(36,970)	
		- 4급 4,584,000원*10%*1명*12월	= 5,500	
		- 5급 3,806,000원*10%*2명*12월	= 9,135	
		- 6급 3,176,000원*10%*3명*12월	= 11,434	
		- 7급 2,271,000원*10%*4명*12월	= 10,901	
		· 시간외수당	(53,675)	
- 4급 5,960,000원*1.5/209시간*15시간*1명*12월	= 7,700			
- 5급 5,212,000원*1.5/209시간*15시간*2명*12월	= 13,465			
- 6급 4,218,000원*1.5/209시간*15시간*3명*12월	= 16,350			
- 7급 3,127,000원*1.5/209시간*15시간*4명*12월	= 16,160			
· 장기근속수당	(2,040)			
- 10년이상 60,000원*2명*12월	= 1,440			
- 5년이상 50,000원*1명*12월	= 600			
· 대우수당	(3,745)			
- 5급 3,806,000원*4.1%*2명*12월	= 3,745			
· 업무대행수당	(4,800)			
- 200,000원*2명*12월	= 4,800			
· 연차유급휴가수당	(9,621)			
- 402,160,000원*1/209*5일	= 9,621			
퇴직급여	754-107 퇴직급여	소 계	74,340	
		퇴직급여총당금 892,080,000원*1/12	= 74,340	
평가급	754-109 평가급	소 계	48,756	
		· 평가급	(48,756)	
		- 대표이사 6,114,000원*1명*120%	= 7,337	
		- 4급 5,656,000원*1명*120%	= 6,787	
		- 5급 4,720,000원*2명*120%	= 11,328	
		- 6급 3,420,000원*3명*120%	= 12,312	
- 7급 2,290,000원*4명*120%	= 10,992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현원대비 자연증가율 및 정월기준 정책인상률 반영 편성
- 업무대행 수당 신설로 인한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인건비 집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재단 임직원 인건비 지급(예산 644,075천원/ 집행액 578,580천원), 잔액 전액 반납
2024	- 재단 임직원 인건비 지급(예산 536,448천원/ 집행액 444,693천원), 잔액 전액 반납
2025	- 재단 임직원 인건비 지급(예산 536,898천원/ 집행액 353,17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4,075	578,581	-	65,494	
2024	536,448	444,693	-	91,755	
2025	536,898	353,178	-	183,720	8.28.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경영지원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경영지원부 주임 이예슬	전화	989-0341
-----	-------	---------------	-----	--------------	----	----------

# 김포복지재단 일반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23번길 52-15 4층
사업규모	김포복지재단		
사업목적	재단운영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상사업 등)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81,554	449,499	471,025	0	-1,698	-19,828	443,614	-5,88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1,554	449,499	471,025	-	-1,698	-19,828	443,614	-5,885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443,614</b>	
일반운영비	754-201-01 사무관리비	소 계	78,864	
		· 소모품비	(2,900)	
		- 현수막, 안내도 등 200,000원*4회	= 800	
		- 물품 운송대, 세탁 등 100,000원*6회	= 600	
		- 각종수수료 등 500,000원*3종*1회	= 1,500	
		· 기본사무용품비	(9,200)	
		- 복사용지 33,000원*20박스*4분기	= 2,640	
		- 사무용품 500,000원*2회*1분기	= 4,000	
		- 소모성물품 320,000원*2회*4분기	= 2,560	
		· 환경개선 물품 및 소모품비	(2,400)	
		- 600,000원*4회	= 2,400	
		· 소프트웨어 구입	(1,320)	
		- 보안소프트웨어(1년) 36,000원*15개	= 540	
- 홈페이지 도메인(1년) 30,000원*1회	= 30			
- SSL보안인증서(1년) 750,000원*1회	= 75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443,614</b>	
일반운영비	754-201-01 사무관리비	· 도서인쇄비 - 자료집(각종자료등) 30,000원*200부*1회 = 6,000 - 예산서 및 결산서 10,000원*50부*4회 = 2,000 - 규정 및 정관 20,000원*20부*1회 = 400 - 기타 자료집 5,000원*50부*4회 = 1,000 - 신문구독비 15,000원*3종*12월 = 540 - 업무수첩 20,000원*60부 = 1,400	(11,340)	
		· 지급임차료 - 정수기대여료 40,000원*2대*12월 = 960 - 공기청정기 대여료 45,000원*2대*12월 = 1,080 - 비데대여료 21,000원*5대*12월 = 1,260 - 제습기 대여료 22,000원*1대*12월 = 264 - 복사기임차료 320,000원*2대*12월 = 7,680 - 근태 시스템 대여료 45,000원*1회*12월 = 540	(11,784)	
		· 지급수수료 - 14,300,000원*1회(결산감사) = 14,300 - 2,200,000원*1회(공익법인 결산공시, 각종신고 등) = 2,200 - 퇴직연금 수수료(DC) 35,300,000원*0.67%*1회 = 230 - 법률자문비 350,000원*12월 = 4,200 - 세무자문비 220,000원*12월 = 2,640 - 노무자문비 350,000원*12월 = 4,200 - 재단 방역 및 해충비용 160,000원*12월 = 1,920 - 재단 에어컨청소 170,000원*10대 = 1,530 - 법무사 대행용역 350,000원*2회 = 700 - 필기시험 대행용역 8,000,000원* 1회 = 8,000	(39,920)	
일반운영비	754-201-02 공공운영비	소 계	28,900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물발송비 3,500원*500건 = 1,750 - 전화 및 인터넷 등 600,000원*12월 = 7,200 - 기타공과금(자동차세, 주민세 등)300,000원*4회 = 1,200	(10,150)	
		· 전기요금 - 사랑의 온도탑 150,000원*12월 = 1,800 - 사무실 전기요금 700,000원*12월 = 8,400	(10,200)	
		· 차량유지비 - 150,000원*3대*12월 = 5,400	(5,400)	
		· 보험료 - 신원보증보험료 150,000원*1회 = 150 - 차량보험료 1,000,000원*3대 = 3,000	(3,150)	
일반운영비	754-201-12 교육훈련비	소 계	8,090	
		- 사이버교육비용 250,000원*1회 = 250	250	
		- 직무능력강화교육 330,000원*11명*1회 = 4,620	4,620	
		- 전국기초자치단체연수비 800,000원*1명*1회 = 800	800	
		- 직원연수비 220,000원*11명*1회 = 2,420	2,420	
회의비	754-201-14 회의비	소 계	11,300	
		- 이사회 수당 및 진행비 100,000원*8명*5회 = 4,000	4,000	
		- 위원회 수당 및 진행비 100,000원*5명*7회 = 3,500	3,500	
		- 노사협의체 운영회의 75,000원*4회 = 300	300	
		-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250,000원*7명*2회 = 3,500	3,5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443,614</b>	
기타 복리후생비	754-201-15 기타복리후생비	소 계	45,540	
		- 급량비 9,000원*5회*11명*12월	= 5,940	
		- 정액급식비 160,000원*11명*12월	= 21,120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430,000원*11명	= 15,730	
		- 건강검진 250,000원*11명*1회	= 2,750	
여비	754-202-01 국내여비	소 계	6,600	
		- 25,000원*2일*11명*12월	= 6,600	
업무추진비	754-203-01 사업업무추진비	소 계	8,000	
		- 2,000,000원*4분기	= 8,000	
직무수행경비	754-204-01 직급보조비	소 계	29,040	
		- 대표이사 400,000원*1명*12월	= 4,800	
		- 4급 210,000원*1명*12월	= 2,520	
		- 5급 205,000원*2명*12월	= 4,920	
		- 6급 200,000원*3명*12월	= 7,200	
직무수행경비	754-204-02 특정업무경비	소 계	2,880	
		- 특정업무수행경비 - 80,000원*3명*12월	= 2,880	
수선유지 교체비	754-214-05 수선유지비	소 계	65,700	
		- 전자문서 그룹웨어관리 6,400,000원*2회	= 12,800	
		- 보안시스템 관리 13,490,000원*2회	= 26,980	
		- 시설 및 장비 수선유지비 500,000원*12회	= 6,000	
		- 홈페이지 관리 6,980,000원*2회	= 13,960	
		- 후원프로그램 설치 2,000,000원*1회	= 2,000	
		- 후원프로그램 관리 330,000원*12월	= 3,960	
관서업무비	754-217-01 정원가산업무비	소 계	880	
		- 정원가산업무비 80,000원*11명	= 880	
	754-217-02 부서업무비	소 계	3,000	
		- 부서업무비 250,000원*12월	= 3,000	
위탁관리비	754-220 위탁관리비	소 계	50,100	
		- 청소용역비 12,850,000원*2회	= 25,700	
		- 위험성평가 및 가족친화 인증수수료 1,200,000원*2회	= 2,400	
- 인권영향평가 22,000,000원*1회	= 22,000			
연금부담금 등	754-304-01 사회보험부담금	소 계	79,170	
		- 659,760,000원*12%	= 79,170	
기타협의체 부담금	754-320-01 기초협의체등부담금	소 계	1,700	
		-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비 100,000원*1회	= 200	
		-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 회비1,500,000원*1회	= 1,500	
시설비 및 부대비	754-401-01 시설비	소 계	23,850	
		- 천장석면 및 서고실 도배교체 20,000,000원	= 20,000	
		- 사무실 정보통신교체 350,000원*11대*1회	= 3,850	

## □ 예산요구 사유

- 성범죄 등 비윤리행위 방지 노력 등 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조직 활동의 공정사회구현 및 인권경영체계 기반 마련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위함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조직 내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제도 추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중장기 연구용역 수행으로 인한 감액
- 상시근로자 50명미만(수탁시설인원 제외)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비용 감액
- 사업장 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기준에 따른 위험성 판단,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
- 조직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으로 가족친화 인증 수수료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인권영향평가 기본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위험성평가 및 가족친화제도 계획 수립
  - 2026. 4.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실시
  - 2026. 5. ~ 12.: 각 사업별 실시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재단 일반운영비 지급(예산 461,601천원/ 집행액 405,064천원), 잔액 전액 반납
2024	- 재단 일반운영비 지급(예산 381,554천원/ 집행액 298,343천원), 잔액 전액 반납
2025	- 재단 일반운영비 지급(예산 449,499천원/ 집행액 280,53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1,601	405,064	-	56,537	
2024	381,554	298,343	-	83,211	
2025	449,499	280,533	-	168,966	8.28.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경영지원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경영지원부 대리 정혁	전화	989-0341
-----	-------	---------------	-----	-------------	----	----------

# 김포복지재단 인권 및 안정 경영시스템 구축

## □ 사업목적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인권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조직의 안정된 시스템 구축

## □ 예산액 : 24,400천원

## □ 2026년 중점 추진사항 및 관련근거

- 성범죄 등 비윤리행위 방지 노력 등 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조직 활동의 공정사회구현 및 인권경영체계 기반 마련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안정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 주요내용

구분	인권영향평가	위험성평가	가족친화인증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체계 검토 및 실행 지침 마련</li> <li>○ 인권침해 사례 및 실태조사</li> <li>○ 주제별, 특성별, 연차별 비교 분석 실시</li> <li>○ 기관별 맞춤형 지표 설계 및 중대성 평가 실시</li> <li>○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연계 분석</li> <li>○ 기관 맞춤형 인권경영 개선 방안 도출</li> <li>○ 인권경영 로드맵 구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교육</li> <li>○ 위험성평가 실시점검</li> <li>○ 위험성평가 조치</li> <li>○ 결과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 제도 현황보고</li> <li>○ 인증심사 컨설팅 신청</li> <li>○ 인증신청</li> <li>○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li> <li>○ 인증위원회 심의 및 결과발표</li> </ul>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인권영향평가 기본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위험성평가 및 가족친화제도 계획 수립
- 2026. 4.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실시
- 2026. 5. ~ 12.: 각 사업별 실시
- 2026. 12. : 결과보고

## □ 예산활용계획

- 인권영향평가 22,000,000원\*1회
- 위험성평가 1,200,000원\*1회
- 가족친화인증 1,200,000원\*1회

# 복지정책연구 · 포럼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4층
사업규모	2회		
사업목적	다양한 시민들의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한 김포시 복지정책 마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외(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장사업 등제항 제항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70,700	70,7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0	0	0	0	0	70,700	70,70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0,700	
복지정책 연구 · 포럼	201(03) 행사홍보비	. 복지정책연구사업 30,000,000원*2회 . 복지정책 포럼 3,000,000원*2회 . 연구책자 발간 15,000원*150부*2회 . 복지정책 개발 TF 100,000원*2회	= 60,000 = 6,000 = 4,500 = 200	

## □ 예산요구 사유

- 23년도 예산 삭감으로 축소된 포럼 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비 증액
- 김포시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 및 공론화 필수
- 복지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선도적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2026. 2. : 연간 및 세부계획 수립
- 2026. 3.~2026. 4. : 연구 수행기관 선정
- 2026. 5.~2026.10. : 연구 진행 및 완료, TF회의 진행
- 2026.11. : 포럼 실시 및 연구보고서 제작
- 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0	- 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김포시 노인맞춤돌봄실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방안 - 김포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확충방안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연구보고회 - 김포복지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보고회 - 워드코로나 시대 사회복지시설이 나아가야할 방향모색 온라인 포럼 - 김포시 노인맞춤돌봄 실태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온라인 포럼 추진 - 김포시 가족정책 서비스 방향 모색 온라인 포럼 - 김포시민대상 사회복지정책 공모전
2021	- 김포형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기초자치단체 5060 신중년 지원방안 연구 - 워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방안 포럼 - 김포시 5060 신중년 지원 방안 모색 포럼 - 복지정책개발 TF 4회
2022	- 김포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김포시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포럼 - 김포시 1인가구 지원방안 모색 포럼 - 복지정책개발 TF 4회
2023 ~2024	- 사업 미 실시

○ 최근 3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6,400	36,386	-	14	
2023	-	-	-	-	
2024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사업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복지사업부 차장 김희경	전화	989-0342
-----	-------	---------------	-----	--------------	----	----------



# 행복나눔콘텐츠개발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사업규모	5회 / 목표액 10억		
사업목적	기업 및 단체,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긍정적 가치창출과 다양한 나눔으로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눔문화를 확산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대상사업 등)제1항, 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2,120	65,420	65,420	0	0	0	94,600	29,1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2,120	65,420	65,420				94,600	29,18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4,600		
	총 계		=	109,400	
	시비 합계		=	94,600	
	연합모금 합계		=	14,800	
행복 나눔 콘텐츠 개발	나눔 문화 사업	합 계	=	(109,400)	
		시비 소계	=	94,600	
		연합모금 소계	=	14,800	
		201(03) 행사운영비	·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등 8,000원*1,000부*4회 · 나눔홍보(성과)영상제작 5,500,000원*2회 · 홍보판넬 및 현수막 제작 150,000원*5회*4분기 · 나눔저금통 제작 600원*6,000개*1회 · 나눔키오스크 14,000,000원*1회*1대	=	(63,600)
		746 연합모금	· 기부자 진행비 15,000원*100명*4회 · 홍보물제작 등(사업보고서 등) 22,000원*400부*1회	=	32,000 = 11,000 = 3,000 = 3,600 = 14,000
	나눔 영화제	합 계	=	(14,800)	
	201(03) 행사운영비	· 영화제 10,000,000원*1회	=	6,000 = 8,800	
	62일 간의 나눔 릴레이	합 계	=	(10,000)	
	201(03) 행사운영비	· 온도탑 유지보수 750,000원*4면*1회 · 기념식 18,000,000원*1회	=	(21,000)	
				=	3,000 = 18,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업 및 단체, 시민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실시
- 기부 참여 유도 및 나눔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영화 상영과 나눔문화 홍보

□ **예산증감 사유**

- 저금통 제작 등을 통한 참여형 시민 기부 확대 추진으로 인한 사업 실시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영화제 신설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나눔문화활성화 사업>

- 2026. 1.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6. 2. ~ 2026. 12. : 지역나눔 홍보사업 진행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나눔문화영화제>

- 2026. 1.~ 2026. 2.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6. 3. ~ 2026. 7. : 사업 세부 추진 및 나눔문화영화제 실시
- 2026. 8. : 사업 결과보고

<제13회 62일간의 나눔릴레이>

- 2026. 8.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6. 9. ~ 2026. 12. : 기부자 표창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 추진, 연말집중모금 기부자 모집
- 2026. 12. : 사업실시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기부건수 4,270건, 기부금액 2,308,659천원 - 배분건수 15,535건, 배분금액 2,470,053천원 - 제11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 모금액 951,461천원
2024	- 기부건수 4,443건, 기부금액 2,366,176천원 - 배분건수 12,401건, 배분금액 2,103,818천원 - 제12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 모금액 1,363,038천원
2025	- 기부건수 1,814건, 기부금액 1,187,464천원(6.30.기준) - 배분건수 4,755건, 배분금액 1,321,269천원 - 제13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 12월 예정(목표액 10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217	44,217	-	-	
2024	62,120	62,072	-	48	
2025	65,420	1,760	-	63,660	8.28.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사업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복지사업부 차장 김희경	전화	989-0342
-----	-------	---------------	-----	--------------	----	----------

# 맞춤형서비스기획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4층
사업규모	취약계층 2,070명, 복지시설 및 단체 340개소		
사업목적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대상사업 등)제항, 제14조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8,640	118,640	118,640	0	0	0	203,300	84,6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8,640	118,640	118,640				203,300	84,66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시비 합계	203,300	
	총 계		= 602,300	
	시비 합계		= 203,300	
	연합모금 합계		= 399,000	
맞춤형서비스 기획지원	명절지원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취약계층 개인 가구 50,000원*800명*2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50,000원*150개소*2회 · 진행비 100,000원*2회	(125,200) = 80,000 = 45,000 = 200	
		합 계	= (43,100)	
		시비 소계	= 28,100	
		연합모금 소계	= 15,000	
	나눔천사 시민 서포터즈	201(03) 행사운영비 · 행사안전보험 200,000원*1회 · 취약계층지원물품 100,000원*270명*1회 · 봉사자평가회의 및 진행비 9,000원*100명*1회	(28,100) = 200 = 27,000 = 900	
		746 연합모금	(15,000) · 취약계층지원물품 50,000원*270명*1회 · 행사물품구입 및 진행비 1,500,000원*1회 = 13,500 = 1,500	
	희망안전망 사업	합 계	(50,000)	
		201(03) 행사운영비 · 희망안전망사업 250,000원*200명*1회	= 50,000	
	사회복지 시설단체 지원사업	합 계	(384,000)	
		746 연합모금	= 380,000 ·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지원사업 7,600,000원*50개소*1회 = 4,000 · 사례집발간 20,000원*200부	

□ **예산요구 사유**

- 당사자 욕구에 부합한 품목 구성 및 물품의 질 제고
- 당사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과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밀착형 사업을 실시
- 지역사회 기업·단체와 협력하여 꾸러미 품질 향상 및 수혜자 만족도 제고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재난·재해·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긴급 위기가구 및 재난·재해 피해 가구 등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비 반영
- 물가 상승 및 품목 다양화로 인한 꾸러미 구성비용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명절지원사업>

- 2026. 1. : 설명절 사업계획 수립, 설명절맞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지원
- 2026. 2. : 설명절지원사업 결과보고
- 2026. 7. ~ 8. : 추석명절 사업계획 수립
- 2026. 9. ~ 10. : 추석명절 맞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지원
- 2026. 11. : 추석명절지원사업 결과보고

<제9회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 2026. 2. ~ 3. : 나눔천사 시민서포터즈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기업 모집
- 2026. 4. ~ 5. : 나눔천사 시민서포터즈 사업추진일정 확정, 참여기관 사전 안내
- 2026. 6. ~ 11. : 취약계층 발굴, 나눔천사 시민서포터즈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희망안전망사업>

- 2026. 1.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확정
- 2026. 2. ~ 12. : 긴급 위기가구 및 재난·재해 피해 가구 발굴 및 지원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사업>

- 2026. 1. : 나눔릴레이 등 지정기탁 기관 사업계획 수립 안내
- 2026. 2. ~ 11. : 사업계획(프로그램/기능보강) 검토 및 교부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취약계층 명절지원사업 총 1,610가구, 184개소</li> <li>· 설명절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84개소, 취약계층 500가구 · 추석명절 : 취약계층 1,110가구</li> <li>- 제6회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취약계층 190가구</li> <li>-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프로그램, 기능보강, 차량, 지정기탁) 68개소</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취약계층 명절지원사업 총 1,711가구, 134개소</li> <li>· 설명절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47개소, 취약계층 1,000가구</li> <li>· 추석명절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87개소, 취약계층 711가구</li> <li>- 제7회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취약계층 270가구</li> <li>- 사회복지시설·단체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지원사업 43개소</li> </ul>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취약계층 명절지원사업</li> <li>· 설명절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16개소, 취약계층 1,093가구</li> <li>-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프로그램, 기능보강, 공모) 57개소</li> <li>- 제8회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취약계층 270가구</li> </ul>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8,945	87,432	-	1,513	
2024	118,640	118,630	-	10	
2025	118,640	68,236	-	50,404	8.28.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사업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복지사업부 차장 김희경	전화	989-0342
-----	-------	---------------	-----	--------------	----	----------

# 시민역량강화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4층
사업규모	33회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대상사업 등)제1항, 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730	21,570	21,570	0	0	0	42,550	20,9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730	21,570	21,570				42,550	20,98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550	
			(21,190)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강사비 (470,000원*8회)+(590,000원*4회)	= 6,120	
		. 원고료 12,000원*6면*40시간	= 2,880	
		. 교재 제작 15,000원*50명*11회	= 8,250	
		. 현수막 제작 90,000원*11회	= 990	
		. 평가회의비 3,000원*50명*11회	= 1,650	
		. 진행비 100,000원*11회	= 1,100	
		. 사업기획자문 TF 100,000원*2회	= 200	
			(21,360)	
나눔교육	201(03) 행사운영비	. 나눔교육 강사비 40,000원*300시간	= 12,000	
		. 나눔교육 수료증 제작 500원*6,000매*1회	= 3,000	
		. 나눔교육 활동자료 제작 1,000원*6,000매*1회	= 6,000	
		. 평가회의비 3,000원*10명*12회	= 360	

**□ 예산요구 사유**

-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직급·영역별 교육 필요
- 다양한 대상에게 나눔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필요
- 교육 횟수 및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 운영 확대 필요
-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횟수·인원 증가에 따른 강사료, 교재비 등 사업비 증액
- 나눔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활동자료 개발 및 제작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2026. 1. ~ 2. : 연간 및 세부계획 수립
- 2026. 3. ~ 11. :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나눔교육>

- 2026. 1. ~ 2. : 연간 및 세부계획 수립
- 2026. 3. ~ 11. :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19건, 674명 - 나눔교육 9건, 나눔교육 리플렛 배포(6,000명)
2024	-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20건, 672명 - 나눔교육 10건, 702명, 나눔교육 리플렛·저금통·기부증서 배포(4,000명)
2025	- 나눔교육 5건, 1,192명, 나눔교육 저금통·기부증서 배포(4,000명) -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16건, 746명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412	51,277	-	6	
2024	24,730	24,724	-	6	
2025	21,570	12,494	-	9,076	8.28.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사업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복지사업부 차장 김희경	전화	989-0342
-----	-------	---------------	-----	--------------	----	----------

# 복지네트워크 확산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4층
사업규모	53회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및 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대상사업 등)제1항 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550	19,490	19,490	0	0	0	30,340	10,8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550	19,490	19,490				30,340	10,85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340	
			(21,180)	
사회복지시설 단체컨설팅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복지시설단체컨설팅 1,200,000원*18회 · 성과보고회 발표수당 120,000원*6명*1회 · 성과보고회 자료집제작 13,000원*45부*1회 · 성과보고회 현수막제작 90,000원*1회 · 성과보고회 진행비 3,000원*45명*1회 · 온라인노무컨설팅 100,000원*12개월 · 컨설팅인승 홍보물 제작 150,000원*3개	= 18,000 = 720 = 585 = 90 = 135 = 1,200 = 450	
			(2,400)	
복지네트워크 확산	201(03) 행사운영비	· 복지협력네트워크사업 - 운영비 12,000원*20명*10회	= 2,400	
			(3,940)	
		· 행복공감감동사례 공모전 - 행복공감감동사례 시상금 (500,000원*1명*1회)+(250,000원*2명*1회) + (100,000원*5명*1회)+(30,000원*10명*1회) - 행복공감감동사례 현수막제작 70,000원*15개 - 행복공감감동사례 홍보물 제작 500원*2,000장 - 행복공감감동사례 진행비 9,000원*10명*1회	= 1,800 = 1,050 = 1,000 = 90	
			(2,820)	
		· 시민모니터링단사업 - 시민모니터링 현수막 50,000원*1회 - 시민모니터링단 실비 50,000원*5명*10회 - 시민모니터링단 간담회 9,000원*10명*3회	= 50 = 2,500 = 27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재단 사업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 반영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복지네트워크 마련을 통한 민·관의 원활한 협력과 자원 연계
- 복지사업 우수·감동사례 발굴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시민모니터링단 간담회 예산액 감액
- 복지시설단체컨설팅사업 횡수 증가 등으로 사업비 증액
- 시민모니터링단 인원 및 모니터링 횡수 증가
- 복지사업 감동사례 공모전 신규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사회복지시설 단체 컨설팅>

- 2026. 1. ~ 2. : 연간 및 세부계획 수립
- 2026. 3. ~ 4. : 컨설팅사업 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
- 2026. 5. ~ 10. : 컨설팅 사업 추진
- 2026. 11. : 컨설팅 성과보고회 진행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행복공감 감동사례 공모전>

- 2026. 1. ~ 2. : 연간 및 세부계획 수립
- 2026. 3. ~ 5. : 공모전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2026. 6. ~ 7. : 선정작 사례집 발간, 공유회 준비
- 2026. 7. : 선정작 공유회 진행
- 2026. 8. :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시민모니터링단사업>

- 2026. 1. : 연간 및 세부계획 수립
- 2026. 2. : 시민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정
- 2026. 3. ~ 12. : 시민 모니터링 및 간담회 진행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프로포절컨설팅 15회, 미션비전컨설팅 16회, 성과보고회 1회, MOU협약 대한노인회 김포지회 외 10건 - 민관협력사업 1건, 시민모니터링단사업 시민모니터링단 교육 1회, 시민모니터링 10회, 간담회 2회 - 사례관리네트워크지원사업 1건, 복지협력네트워크사업 복지정책개발TF 회의 1회, 전문성강화TF 회의 2회, 사회복지계거버넌스 회의 4회, 교육거버넌스 회의 1회, 복지협력네트워크회의 1회
2024	- 복지시설컨설팅 17건 - 복지협력네트워크사업 12건 - 시민모니터링단 18건
2025	- 복지시설컨설팅 13건 - 복지협력네트워크사업 4건 - 시민모니터링단 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450	22,393	-	5,057	
2024	21,550	20,936	-	613	
2025	19,490	8,579	-	10,911	8.28.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사업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복지사업부 차장 김희경	전화	989-0342
-----	-------	---------------	-----	--------------	----	----------

# 취약계층지원강화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4층
사업규모	취약계층 1,145명		
사업목적	국가적 재해, 재난에 따른 위기 상황, 지역사회 현안을 공동체가 공유하고 협력하여 나눔을 확산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대상사업 등)제항 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0	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0					0	0	
기타		0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시비 합계	0	
	총 계		= 750,250	
	시비 합계		= 0	
	연합모금 합계		= 750,250	
취약계층 지원강화	우리 김포 긴급 지원	746 연합모금 · 긴급지원가구 350,000원*600명*1회 · 보훈취약계층가구 200,000원*200명*4회	= 210,000 = 160,000	(370,000)
	정기 결연	746 연합모금 · 정기결연지원가구 130,000원*145명*12회	= 226,200	(226,200)
	미래 세대 성장 사업	746 연합모금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000원*100명*1회	= 50,000	(50,000)
	맞춤형 행복 나눔 지원 사업	746 연합모금 · 한부모, 조손, 윤둔형, 노인, 장애인가구 등 1,000,000원*100명 · 다과비 7,500원*5명*12회 · 회의심사수당 100,000원*3명*12회	= 100,000 = 450 = 3,600	(104,050)

□ **예산요구 사유**

- 복지그물망지원사업은 재단 자체 발굴 자원으로 사업 실시
- 김포시 복지안전망 형성 및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 구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우리김포긴급지원사업>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및 읍면동 자원 안내, 사업추진 매뉴얼 안내
- 2026. 1. ~ 12. : 사업실시 및 결과보고

<정기결연지원사업>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및 정기대상자 현황 안내
- 2026. 6. : 상반기 정기대상자 결과보고 안내 및 사례가구 중간점검
- 2026. 12. : 사업결과보고

<미래세대성장사업>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자 접수·선정·지원, 장학금 교부
- 2026. 12. : 사업결과보고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지침 발행
- 2026. 1. ~ 12. : 읍면동 및 시설, 기관 공문안내 및 필요 대상가구 신청, 접수, 맞춤형 행복나눔심의위원회 운영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8.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맞춤형행복나눔지원 168가구, 우리김포 긴급지원 426가구, 정기결연지원 2,243건, 미래세대성장사업 523명 - 가족기능강화사업 30명, 긴급재해재난사업 644건, 지역사회현안사업 96건, 사각지대발굴 59명.
2024	- 맞춤형행복나눔지원 161가구, 우리김포 긴급지원 1,275가구(보훈 699가구), 정기결연지원 1,938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7명
2025	- 맞춤형행복나눔지원 49가구, 우리김포 긴급지원 431가구(보훈 311가구), 정기결연지원 1,023건, 미래세대성장사업 52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사업부	경영·복지사업부장 이민영	담당자	복지사업부 차장 김희경	전화	989-0342
-----	-------	---------------	-----	--------------	----	----------